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8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형동・우재준・유용원

김소희・김 건・박정하

조경태 · 박형수 · 이양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 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u>· 운영할 수 있다.</u>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u>청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u>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u>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2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
	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